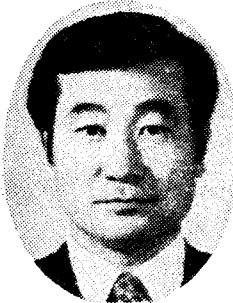


## <資料>



# 國家技術士法의 草案

The Draft of National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Law

金 岳根\*

Kim, Suen Guen

##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國家技術士法草案의 概要 |
| II. 草案을 作成하게 된 契機           | V. 國家技術士의 活性化指標  |
| III. 技術士와 關聯된 各種法(或은法案)의 對比 | VI. 맺는 말         |
|                             | VII. 主要參考文獻 및 資料 |

## I. 머리말

모든 技術士의 念願이 其間 母法을 되찾자는 論議가 많았으나, 이것이 活潑하게 된 것은 1985년의 8月부터였고, 筆者가 平素에 先進各國의 技術士制度에 關해서 研究하고 있던 次에 小生에게 母法을 되찾기 위한 草案作成研究用役을 同年 9月下旬頃에 技術士會事務局으로부터 委嘱받게 되어 所謂「科學技術士法案」이라하여 全文 57條와 附則으로 草案作成하여 理事會에서 審議한바 現實情에서는 너무 過激한 法條文과 關聯法規의 範圍가 커서 立法推進에 貧弱한 技術士會本體의 힘으로는 母法還元化에 미치기 至難할 것이라는 論議끝에 「科學技術士法案」보다 緩小된 新로운 趣旨의 「國家技術士法案」을 다시 別途로 草案하기에 이르렀고, 草案者로서 立法趣旨를 적어 萬天下에 公開하여 衆智와 輿論을 喚起시키기 위해 이 글월을 적기로 한 것이오니 會員各者の 激勵助言과 意見을 提示하여 주시기 바란다.

## II. 草案을 作成하게 된 契機

技術士活性化를 積極促進하기 위해 85年 10月 26日에 起草되었던 所謂「科學技術士法案」의 主要骨子로는 ①資格과 業務遂行內容全般을 統合한다. ②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할 事業과 施設物에 關한 技術用役遂行은 技術士資格者만이 할 수 있다. ③기술士輔 같은 見習期間을 둔다. ④기술仲裁를 法制화한다. ⑤기술士가 作成한 關係圖書에는 署名捺印의 表示行爲를 한다. ⑥技術用役業體의 質과 量에 對한 需給調節을 必要時마다 하도록 한다. 等이었으나, 이것을 立法化하는데는 直接關聯되는 法規로서 國家技術資格法, 技術用役育成法 建築上法(建築部門의 技術士와 建築士法의 建築士을 統合하기 위하여) 및 仲裁法等의 非가지 法이었으나, 이것이 廣範圍하여 母法을 되찾기위하여는 短時日內에 立法化가 힘들 것으로 推斷되어 이것을 緩小하여 舊技術士法의 基本骨子精神에 個人技術用役業을 統合하는 新立法案이 되는 所謂「國家技術士法案」을 86年 1月 26日 理事會決議로서 再次草案作

\* 土木技術士(한만 및 해안) · 成均館大 工大講師

五-3.1 國家技術士法案과 各種技術士法(舊·日本) 및 建築土法主要條項對比表(SGK)

법(案)별 분 형별내용 전문항목	국가기술사법 (1986) 53항 및 부 칙	舊技術士法 38항별부 부칙	日本技術士法 63항별부 부칙	建築土法 43항별부 부칙	科學技術士法案 (1985) 57항별부 부칙	備考
제정공布年度	법안中(技術士會)	1963. 11. 11	1983년 4월 27일 改正分	1973. 12. 16.	1985. 10. 26. 立案 (政策委)	1. 日本技術士法에 의 한(1983年 改正)科 學技術士法 내 부現在의 國家技 術資格法에 의한分 類對比表는 別表를 参照。
呼稱	國家技術士	技術士	技術士	建築士	科學技術士 Technologist	2. 科學技術士法案은 1986. 1. 23. 現 本會 에서 國家技術士法 案으로 缩小調整 키로함。
個人技術用業 個人技術用業	個人에 限定한나	明示한다	明示한다	單獨·合同으로 되 어 있다	個人·事業·團體 에 由 有	
科學技術部門의 分類	21개種을 調整함	13個種	(多様하게 分類되여 있어) 17個種	無該當	國家技術・資格法 에 由 有	
優待條項	第6條에 明文化 과 同一하다	第25條 技術上 用	關聯法規에 明示 되어 있다	第4條 第1項에 強 力하게 明示되어 있다	第6條 第1, 2, 5項에 大半後 7年實務研 究(經歷者가 技術士 補正試合格하려 登録後資格 있나	
應試資格	現國家技術資格法 과 同一하다	僅體試驗合格者 은 免除者로 早于 或은 或은 통산 7年	技術上惟呈營業且然 後에 技術士(第二次試 驗에 通過) 가진 有) 있다	建築上惟呈營業且然 後에 技術士(第三次試 驗에 通過) 가진 有) 있다	大半後 5年以上의 建築에 關連 資格 研究經歷을 가진 者가 技術士 試驗 에 由 有	
資格試驗의 基準과範圍	경력審查, 筆記試 驗, 口述試驗	經驗審查, 筆記試 驗, 口述試驗	第一次試驗으 로 分離되	筆記 및 口述試驗	第一次, 二次試驗。 又 分離	
指定試驗機關의 指定	第20條에 明示함	技術上 管理委員 會에 主管	指定試驗機關은 技師士會에 指定함	技師士會에 指定함	建設部가 主管한 技師士會에 指定함	科學技術士審議委 員會主管下에 技師 士會가 管掌함
表示行爲(署名捺印)	第33條에 明示함	없다	名稱表示의 義務 條項은	第21條에 明示함	第29條에 明示함	
業務關係종류의 申告義務	없다	없다	없다	第22條에 明示함	第30條에 明示함	
技術仲介業務	技術判斷與度量	없다	없다	없다	第31條에 明示함	
技術士會議委員會	法第42條에 明示함	技術士會議委員會에 있다	法第5章에 明示함	法第32條에 明示함	第39條에 明示함	
會의 設立運營	法第45條에 明示함	法第45條에 明示함	技術士會議會가 있다	建築士會議會가 있다	第34條에 明示함	

業을 하게 된契機가 된 것이다.

여기서 問題되는 技術士의 名稱인데 이것은 1957年 5月에 日本技術士法의 制定에서 생긴것이고, 漢字文化圈에 屬하는 韓·中·日 3個國中 韓國도 日本과 같은 表記文字를 썼고 中國(自由)亦是 엔지니어는 「工程師」로 表記되나 一般엔지니어稱號와 달리하여 技術士로 表記되어 区別이 되어 있다. 그래서 舊技術士法과 判異하게 区別하기 위해 “科學技術士”로 假稱하여보다가 最近에는 “國家技術士”(National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로 暫定名稱으로 表記하게 될 것이다.

### III. 技術士와 關聯된 各種法(或은 法案)의 對比

#### 3.1. 日本技術士法과의 一般的인 對比

別添된 표-3.1과같이 5個法(或은 法案)과의 主要條項別對比表를 보건대 所謂 國家技術士法案은 全文 53個條와 附則으로構成하였다. 여기서 銘記한 것은 技術士法이 1963年 11月에 制定公布된 것은 1957年 5月에 制定公布된 日本技術士法을 거의 模倣한 것이었고, 이것은 其間三次에 걸쳐 改正되어 最近改正分이 1983年 4月27日에 制定公布된 것으로 그 主要骨子로는 ① 技術士補制度에 의한 見習期間의 法制化로서 經歷審查와 같은 허술하기쉬운 文書記錄審查를 없앴다는 것과 ②試驗管理에 關한 法條文이 無慮 28個條項 即, 全條文의 거의 折半을 차지하고, 本法에 確固不動하게 法條文化했고, 우리처럼 施行令에 具體化 明示事項을 條文化하는 것이 아니고, 母法條項은 많고, 施行令은 그 條項이 적게하여 必要時마다 便宜의으로 改正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點이고, 其間의 技術士試驗管理에 있어서 日本에서도 끊이지 않는 雜音과 滯生의 對象이 되어온 것은 分明한 事實이라는 것을 알수가 있다.

더우기, 指定試驗機關制를 新設하여 現在 日本技術士會가 指定되어 있기는 하지만 部門別로 指定試驗機關이 指定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現國家技術資格法에는 試驗管理關係條項이 不過 3個條로 되어있고, 同施行令에

서도 10個條로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最新日本技術士法의 試驗管理條項上 特異한 點은 指定試驗機關의 技術士試驗委員(第15條)에 關한 것을 指摘할 수 있다.

即, 다음과 같이 技術士試驗執行時마다 技術士審議會의 推薦에 따라 技術士試驗委員候補者中에서 選定하고 이것의 選任과 解任은 科學技術處長官의 認可만이 그 效力은 發生토록 三段階의 過程을 跟도록 까다롭게 만들어 不正行爲의 源泉의인 방파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① 指定試驗機關은 技術士試驗問題의 作成과 採點을 技術士試驗委員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

② 技術士試驗委員은 技術士試驗執行時마다 科學技術處長官이 選定한 技術士試驗委員候補者中에서 指定試驗機關이 選任한다.

③ 科學技術處長官은 技術士試驗執行時마다 技術士試驗執行에 必要한 學術經驗이 있는者中에서 第48條에서 規定한 技術士審議會의 推薦에 따라 技術士審議委員候補者를 選定한다.

④ 技術士試驗委員의 選任과 解任은 科學技術處長官의 認可를 받지않으면 그 效力이 生기지 않는다. (以下省略함)

國情에 따라 이대로 우리가 分발을 必要는 없겠지만 여러 모로 參考로 하여야 할 것이다.

#### 3.2. 科學技術部門의 分類對比

現在, 韓國은 20個部門에 95個專門分野로 日本보다 더욱 細分化되었고, 日本은 우리보다 더 적은 17個部門에 72個專門分野로 分類되어 있다.

표-3.2의 韓國과 日本技術士의 科學技術部門別·專門分野別對比에서 보다시피, 韓國에는 電子, 通信, 建築, 에너지, 安全管理, 環境管理等의 6個部門이 日本에는 없는 것이고, 反對로 日本에는 衛生工學部門이 獨立되어 있다.

專門分野別로 對比하면 機械部門에서는 機械工程設計, 鎔接, 建設機械等 세가지가 日本에는 없고, 反對로 日本쪽에는 化學機械, 建設·礦山荷役 및 運搬機械等 두가지가 判異하게 分類되어 있다.

化工部門에서는 纖維素, 有機化學, 化學工場設計等 세가지가 日本側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日本側에는 세라비스分野가 判異하게 獨立分野로 되어 있다.

電氣部門에서는 電氣機器와 電氣材料分野가 日本에는 없다.

電子部門에서는 세가지 專門分野가 있으나 日本에는 電氣部門속에 電子應用의 專門分野가 하나만 있다.

造船部門에는 세가지 分野中 造船設計分野가 韓國것만 獨立되어 있다.

航空部門에는 日本것만 航行援助施設의 分野가 判異하게 獨立되어 있다.

土木部門에서는 韓國은 施工이 包含되어 있고 日本것은 터널과 施工計劃 및 施工設備의 두개 分野가 判異하게 分類되어 있다.

纖維部門에는 製布 및 生糸의 2個分野가 日本과는 判異하게 獨立되어 있다.

生產管理部門에서는 日本쪽은 工場計劃의 1個分野가 獨立되어 있다.

產業應用部門은 日本것과 對比할때 應用理學, 農業, 林業, 水產의 4個部門을 合친것과 거의 같으나, 日本에 있는 物理와 化學 農業 및 蠶糸 地域農業開發計劃等의 3個專門分野의 것은 韓國에는 없다.

### 3.3. 舊技術士法의 技術士와 產業應用部門의 分類調整檢討

別添된 표-3.3.과 같이 舊技術士法이 1973年 12月 31日 廢法이 되면서 孤兒存在와 같이 專門分野上의 畜產, 植物防疫, 作物의 세개 分野는 無所屬으로 脫落했고, 法施行上의 間接要因 인지 몰라도 合格者(應試者에 關해서는 未詳이지만)가 斷續狀態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技術士活性化에 退步를 促進한 科學技術部門의 分類錯誤가 한 要因으로 作用할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라고 推定된다.

國家技術資格法의 制定公布以後 12年餘가 經過한 오늘날까지 公式的으로 產業應用部門 및 其他關聯部門의 矛盾點은 指起한 者가 없었으나, 當幸히도 이에 깊은 關心을 갖었던 產業應用技師(地球物理) 李錫祐氏의 提案을 引用하여 本法草案에 反映코자 한다.

그 提案上의 重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표-3.3. 舊技術士法 技術士現況表

科學技術 部門別	專門分野別	合格年度 (回數)	會員數 (人)
區	農 業	畜 產	1964(1)
		植物防疫	1964(1)
	作 物	1973(10)	1
		1970(7)	1
		1971(8)	1
		1973(10)	1
		1973(10)	1
分	水 產	漁 撈	1973(10)
	林 業	林 業	1973(10)
合計	3個部門	5個專門分野	4個年度만 合格者 있었음
			9

주기 ① 應試記錄資料未入手로 應試狀況分析不可能하였다.

② 海洋技術士(漁撈) 1人 85年度(26回) 合格者는 加算하지 않음.

- 가) 地球物理 및 應用地質分野를 獨立的으로 地球科學部門으로 묶는다.
- 나) 國土開發部門의 測地分野를 刪除하고 地球物理分野에 結合하고 地籍을 刪除
- 다) 海洋部門에서 海洋分野를 地球物理에 統合하고 餘他水產養殖과 漁撈 그리고 產業應用의 水產製造를 吸收하여 水產部門으로 改編함.
- 라) 地球物理의 物理探查를 應用地質에 移管.
- 마) 本法 經過措置로 改編되는 技術士는 自動移管 시킨다.
- 또, 그 要旨를 舊技術士法 및 日本技術士法과 對比하여 적으면 다음과 같다.
- 1) 舊技術士法 및 日本技術士法에는 應用理學部門(數學, 物理 및 化學, 地球物理, 地質, 生產管理)로 되어 있다.
- 2) 舊技術士法 및 日本技術士法에는 測地, 地籍, 海洋技術士는 없으며 地球物理안에 海洋觀測, 測地가 內包되어 있음
- 現行技術士의 活動중 測地는 測量法에 의한 測地技士가 모든 業務를遂行하고 있다.
- 地球物理의 範圍를 國際學術團體인 IUGG(國際測地 및 地球物理學聯盟)의 測地, 氣象, 海洋

표-3.4. 3個現部門의 修正案(李錫祐) 1986. 2. 12

現 行	修 正
· 產業應用部門	· 地球科學( 또는 應用科學) 部門
· 地球物理分野	· 地球物理分野
地磁氣, 地電流 地震測定	氣象
氣象觀測, 氣象豫報	海象
海洋觀測	水文
測地	測地
및 物理探查 其他 地球物理에 관한 사항	地磁氣, 地震, 火山現象에 관한 觀測 分析評價, 豫報 기타 地球物理에 관한 事項
· 應用地質分野	· 地質分野
礦床調查 및 油田調查	地質
試錐 其他 地質調査, 分析, 評價 其他 地質에 관한사항	礦床, 炭田, 油田 등 地下資源
	地下水에 관한 試錐調查, 物理探查, 分析, 評價, 其他 地質에 관한 事項
· 國土開發	
· 測地分野	· 削除 (地球物理와 重複이 브로 결합)
測地 및 測地測量에 관한 計劃, 管理, 實施外 評 價 其他 測地에 관한 事項	
· 地籍	· 削除
地籍測量에 관한 計劃 管理實施와 評價 其他 地籍에 관한 事項	
· 海洋部門	· 水產部門으로 改編
· 海洋分野	· 海洋分野 削除
海洋生物	水產漁効와 重複
海洋地質	
海洋化學	水質
海洋物理	地球物理와 重複
海洋資源 및	海岸 및 港灣, 造船과 重複
海洋工學 其他 海洋部門의 調査, 評價外 計劃등에 관한 事項	
· 水產養殖分野	· 養殖分野
· 漁撈分野	· 漁撈分野
· 產業應用部野	· 水產部門으로 移管
· 水產製造分野	· 水產製造分野

物理, 水文, 地磁氣, 火山學, 地震學分科와 같  
이 調整 한다면 測地, 海洋技術士는 地球物理  
에 包含시킬 수 있다.

現 地球物理範圍는 理物探查가 包含되어 있는

데 地質調查의 한 手段이라는 觀點에서 이를 地  
質으로 移管함이 妥當함.

3) 舊技術士法 및 日本技術士法에는 海洋部門  
은 없으며 水產部門이 있으므로 海洋을 地球物

理와結合하면 水產部門을 獨立시키고 產業應用의 水產漁撈를 包含시킨다.

現行法上의 3個部門을 修正하는 李錫祐氏案은 附表-3.4. 과 같다.

## II. 國家技術士法草案의 概要

(1) 技術士의 呼稱變更 및 統一과 業務內容에 새로운 것을 追加하였다.(法案第2條) 이 條項中 主要한 骨子만 쳐는다.

法案第2條 第1項:「國家技術士라 함은 登錄을 하고 그 名稱을 使用해서 科學技術(人文科學에만 關聯된 것을 除外)에 關한 高度의 蕩積된 專門的知識와 實務經驗에 立脚한 應用ability을 要하는 事項에 關한 計劃·研究·設計·分析·試驗·生產·施工·評價·診斷·시스템화 또는 이에 關한 指導·監理·技術判斷(Technical Judgement & Decision)等의 業務에 關하여 이法에 의한 資格을 얻은 者를 말한다.」名稱, 生產시스템·技術判斷等이 現行法보다 加味되었다.

法案第2條第2項:「기술士業(個人技術用役)이라함은 他人의 委託에 의하여 高度의 科學技術을 活用하여 事業 및 施設物의 計劃·研究·設計·分析·調查·試驗·監理·評價·診斷·諮詢·指導·事業管理·技術判斷·其他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個人技術用役을 技術士業으로 呼稱變更하여 一新하기로 한다.

※技術判斷(Technical Judgement & decision)

이라는 新用語는 法的拘束力を 갖는 技術仲裁權을 갖지는 못하게 될지라도 技術士가 保有하는 專攻技術能力으로 技術上의 和解나 또 技術의인 仲裁(여기서는 Arbitration가 아닌 것)를 必要로 한 경우 技術의인 判斷을 내리는 事業도 考慮하게 되어 이것을 새로이 插入했고, 實地로 이러한 일이 發生되나, 評價, 診斷 같은 用語와는 判異하므로 區別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2) 技術士의 資格取得(法案第4條)

勞動部에서 科學技術處로 還元시키고자 하는 部分은 現行의 國家技術資格法에서 技術士資格만이고 殘餘部分인 技能資格만 繼存시키는 것이다.

(3) 個人技術用役業務의 獨占(法案第5條)

技術用役을 技術士만이 할수있다고 法條文化했을 경우 獨占規制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다. 한事例로서 建築土法第4條 第1項에는 建築設計監理의 獨占條項이 있다.

參考事項: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施行令(1981.4.1. 大令第 10267 號)의 「第2條第3項用役業과 社會 및 個人서비스 業中, 經濟企劃院長官이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指定하고자하는 事業」은 規制對象이 될 수 있다.

(4) 技術士의 優待(法案第7條)

現 國家技術資格法의 優待條項보다 더한胥 強化되었다.

(5) 資格試驗의 基準과 範圍(法案第18條)

經歷審查, 筆記試驗, 口述試驗의 세段階을 訓도록하였다.

(6) 指定試驗機關의 指定(法案第20條)

新設條項으로서 1983年에 改正된 日本技術士法을 模倣한 것이고, 以下에 계속해서 法案第31條까지 引用한 것이다.

(7) 資格手帖의 管理(法案第33條)

手帖交付後의 身上異動 및 變更事項을 徹底히 手帖에 記載하도록 하였다.

(8) 技術士의 業務確認에 關한 表示行爲(法案第38條)

母法上에 法制화하기로 한 것으로 關係圖書에 登錄된 印章으로 署名捺印한다.

※ 施行令에 過去法條文이 있다가 刪除된 바 있음을.

(9) 技術士審議委員會의 設置·運營(法案第42條)

舊技術士法에 있던것을 復活시킨 것이다.

(10) 韓國技術士會의 設立(法案第45條)

舊技術士法의 廢法에 따라 現在의 韓國技術士會는 設立法的根據을 衰失하고 있었고 또, 刷新한 意氣伸張의 뜻에서 名稱도 달리하였다.

## V. 技術士의 活性化指標

### 5.1. 國家技術士法의 立法上背景

舊技術士法은 1963年 11月 11日(法律第 1442

號)에 制定公布되면서 技術士의 法的地位가 確固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法은 其當時, 情報蒐集의 未洽으로 因해 日本技術士法의 最初立法이었던 1957年 5月 20日法律第 124號의 것을 거의 模倣하였기에 西歐와 같은 法的地位와 社會的인 優待條項을 立法化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 技術資格과 業務를 함께 法制화한 것은 建設業法(1958. 3. 11. 法律第 2290 號)을 為始하여 辨理士法(1961. 12. 23. 法律第 864 號), 測量法(1961. 12. 31, 法律第 938 號), 建築士法(1973. 12. 16 法律第 1536 號), 國土利用管理法(土地評價士에 關한 것, 1972. 12. 30 法律第 2408 號)等이 있다.
- 國家技術資格法이 1973年 12月 31日 制定公布되면서 舊技術上法은 廢法이 되고 建設業法의 技術資格만 吸收되고 建築士法은 同年同月에 制定公布되면서 國家技術資格法과 隔離된 同種의 技術資格關係法이 있다는 二元的인 非合理性과 衡平의 原則에 相馳되는 立法事例가 있다는 것을 銘記하여야 한다.
- 現在, 技術士만이 그 資格은 國家技術資格法으로 1973年에 統合되고 業務는 재各其分離되어 技術用役育成法(1973年 2月 5日 制定公布, 法律第 2474 號)과 建設業法에서 活用되고 있어서 統合運用되고 있는 辨理士法의 辨理士나, 建築士法의 建築士의 活性化보다 不利한 社會的·法的待遇를 받고 있는 實情에 놓여 있다.
- 所管部處別로 國家가 資格을 附與하고 있는 立法體制에서 唯獨技術士만이 勞動部所管으로 되어 있어서 科學技術發展施策을 다루는 科學技術處로 還元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또, 建築部門의 國家技術資格은 韓國만이 二元體制이고, 美國 및 日本에는 一元化가 되어 있는 實情이다.
- 祖國의 近代化建設을 위해 技術士制度의 先進化國際化를 위한 法制化概念의 必要性이 國際間의 交流交易增大로 因해 漸增하고 있는 實情인즉, 同時에 國家社會經濟發展의 要求에 따라 國家發展戰略上 不可避하게 所管部處의 管轄法으로 還元 및 補完하도록 立法이 促求되고 있다.
- 現行技術用役育成法에서 度外視의 儉待를 받고 있는 個人技術用役의 西歐的인 發展을 圖謀하고 資格과 業務를 함께 둑는 統合法인 所謂 假稱「國家技術士法」의 立法草案을 作成하게 된 것이다.

## 5. 2. 活性化를 위한 立法必要性

◦ 1973年度에 制定公布된 技術士資格을 主로한 「國家技術資格法」과 技術用役業務育成促進과 關한 「技術用役育成法」等은 新로운 時代의 要請과 先進化·國際化를 指向하고 있는 우리社會 現實情에 副應하기에는 그 內容과 體制및法體系가 不充分非合理하고 時代의 落后性, 活用性의 未洽, 實效性의 微弱한 것으로 現在 啓은 技術士가 指摘하고 있다.

◦ 國家技術資格法의 制定은 各部處가 所管하던 各種分野의 技術資格을 統合하여 同水準에 制一의인 統制下에 두기 위해 1963年 11月에 制定公布되었던 技術士法은 廢法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나, 母法을 喪失했던 技術士의 企願은 辨理士法이나, 建築士法처럼 資格과 業務가 統合된 新立法을 希望하고 있는 것이다.

◦ 國家科學技術發展政策과 現實情에 비추어 科學技術의 高度의 專門應用能力을 가진 技術士는 現在의 勞動部所管으로부터 從前대로 科學技術處所管으로 還元되기를 渴望하며 이것이 技術士活性化의 첫 段階로 느끼고 있는 實情이다.

◦ 先進西歐의 美英國처럼 段階的으로 發展시키기 위해 將來指向下에 技術仲裁制度화의 밀거름으로서 技術仲介와 技術判斷業務를 法條文化해서 個人技術用役業務의 範圍를 擴大시켜 活性化에 拍車를 加하고자 하는 것이다.

◦ 따라서, 위의 二大支柱가 된 技術士의 關聯法은 새로운 次元에서 既存의 두가지 關係法에서 拔萃와 刪除로서 新立法을 構想하므로서 二千年代의 科學技術의 先進國進入을 科技處의 新立法案인 「科學技術革新促進法」과 商工部의 制定新法인 「工業發展法」(1985年末國會通過된 바 있음)과 同一 步調로서, 法體系의 整備와 함께 先進化·國際化에 指向할 수 있게 되고, 國家技術士의 活性化가 國家的·社會的으로 法的優待를 받는 實質的인 利益이 되는 보다 綜合的이고, 體系的인 立法化措置의 早速한 實現이 必要한 것이다.

丘 3.2. 韓國과 日本技術士의 科學技術部分別·專門分野對比表(86.2.20 現在)

韓 國		日 本		韓 國		日 本	
技術部門	專門分野	技術部門	專門分野	技術部門	專門分野	技術部門	專門分野
機 械	機械工作用工具機械	機 械	機械加工用加工機械	建 築	• 建 築 施 工 建築機械設備 建築構造設備 • 施	日本	日本建築工芸與統合 製造工程
	熱 動 機	原 動 機	原動機				
	精 密 機 械	精 密 機 械	精密機械				
	交 通 車 輛	鐵道車輛	鐵道車輛及自動車				
	流 体 機 械	流 体 機 械	流體機械	機 械	• 製 動 動 力 染 色 • 生 產 工 作 衣		
	造 製 機 械	造 製 機 條	產業機械		車 頭 金 屬 加 工 色 彩 加 工		
	冷暖房設備機械	冷暖房設備機械	冷暖房設備機械		• 生 產 裝 設		
	機械工程技術				• 裝 雷		
	• 紡 織 技 術				• 電 子		
	• 建 設 機 條				• 生 產 裝 設		
			• 化 學 機 條		• 生 產 裝 設		
			機 條 設 備		• 生 產 裝 設		
			• 建 設 調 清 設 備		• 生 產 裝 設		
			運輸機械		• 生 產 裝 設		
金 屬	鐵 合 金	金 屬	鐵 合 金	機 條	• 運 輸 探	農 業	金屬農業 石炭 煤 石油鑄業
	金屬材料	金屬材料	金屬材料		運 輸 介		
	非 摧 破 合 金	非 摧 破 合 金	非 摧 破 合 金		電 車		
	衣 服 食 品 球	衣 服 食 品 球	衣 服 食 品 球		電 車		
	金屬加工	金屬加工	金屬加工		電 車		
化 工	化 學 藥 物	化 學	無機藥品及化學肥料	機 條	數 据 處 理	農 業	情報處理 情報分析 電子計算機應用
	化 學 油 油	化 學	燃料及潤滑油		情 報 處 理		
	無機藥品				情 報 處 理		
	• 藥 物				情 報 處 理		
	化 學 裝 置 及 設 備		化 學 裝 置 及 設 備		電 子		
電 氣	有機化學製品		有機化學製品	機 條	電 子		
	• 電 氣		高 分 子 製 品		電 子		
	• 電 氣 廉 重 廉		• 高 分 子 製 品		電 子		
	• 電 氣 機 器 用		• 電 氣 應 用		電 子		
	• 電 氣 材 料		電 氣 應 用		電 子		
電 子	電 氣 音 電 氣			生 產 管 理	包 玉 品	經營工學	包裝與流通 市場管理 品質管理 • 市場計劃
	工業計測制御				管 球		
通 信	電 氣 通 信			生 產 管 理	管 球		
					管 球		
造 船	• 造 船 設 計	船 舱	船 用 機 條	產 業 應 用	農 食 品	應 用 理 學	地球物理外 地球化學 地質 • 物理外 化學
	機 艉 國 體	船 舱	船 用 機 條		水 水		
航 空	航 空 機 國 體	航 空 機	航 空 機 施 設	環 境 管 理	化 製		
					製 製		
土 木	土 建 橋 架 造	建 設	土 建 橋 架 造	環 境 管 理	加 工	應 用 理 學	地球物理外 地球化學 地質 • 物理外 化學
	港 潘 廉 海 岸		港 潘 廉 海 岸		加 工		
	道 路 廉 空 港		道 路		加 工		
	鐵 道		鐵 道		加 工		
	水 資 源		水 資 源		加 工		
國 土 開 發	上 下 水 道		上 下 水 道	舊 技 術 工 法	農 產	農 業	畜 產 農藝化學 農業土木 • 農業 畜 藏 • 地政農業開發計劃
	蓄 溢 排 水 廉 資 源		蓄 溢 排 水 廉 資 源		• 植 物 防 疫		
	施		施		• 作物		
	地 程 廉 市 計 划					林 業	森林土木 林 產
	• 地 地						
	• 造					水 產	漁 葉 增養殖 • 水產加工
		衛 生 工 學	衛 生 工 學				
			• 环境管理 • 环境治理 建築環境設施 空氣環境設施				

註記：韓國은 20個部門 95個專門分野、日本은 17個部門 72個專門分野

• 表記는兩國의 20과 17의 專門分野

게 하기 위해 쓰게 된 것이다.

## V. 맷는 말

이번에草案된 國家技術士法은 國家技術資格法에서 技術士資格을 還元시키고, 技術用役育成法에서는 個人技術用役을 削除하여 統合시키는 主된 骨子에 試驗委員選定管理에 候補決定 三段階 選任方法을 條文化하게 되므로 母法으로서는 法條文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即 施行令보다 母法에서 法條文은 明確化 및 不動化한다는趣旨로 하게 된 것이다. 언제 立法措置過程을 거치게 될지 未知이지만 많은 者의 關心을 불러이르기

## VII. 主要參考文獻 및 資料

- 7.1. 法典, 1984年, 趙相元/編著 玄岩社刊
- 7.2. (日本)技術士關係法令集 日本技術士令 1984年7月1日發刊(66面)
- 7.3. 기술사誌 Vol. 18, No. 4 DEC. 1985, pp. 43~53 “技術士業務을 위한 國內法規 및 西歐先進國의 標準約款에 關하여”, 金均根
- 7.4. 科學技術士法制定에 관한 請願書案, 1985.
- 11.13. 韓國技術士令

## ◇ 案 内 ◇

### 國內產業視察會員募集

本會에서 每年 實施하는 國內產業視察을 今年度는 오는 5月 31(土) 동서식품(인천효성동)을 見學코자 하오니 많은 參加바랍니다.

參加를 希望하시는 會員은 오는 5月 24日까지 本會 事務局으로 申請있으시기 바랍니다.

參加會費는 1人當 10,000 원임.

1986. 4.

(社) 韓國技術士會事務局